

제 658 호  
1978. 5. 2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 자 손  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 
전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

제 1241 호 :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설치조례 등  
개정조례..... 3

제 1242 호 :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사용료 징수조례... 3

◎ 고 시

제 219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 5

제 224 호 :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지적승인..... 5

제 226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 청사도로) 결정, 변경결정  
및 지적승인..... 6

제 227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 7

제 228 호 :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..... 7

제 229 호 :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결정 ..... 8

제 230 호 :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, 운동장) 결정 및 지적  
승인..... 8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231 호 :	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.....	9
제 232 호 :	도시계획시설 ( 공원, 도로, 학교, 시장, 공공용지 ) 지적승인.....	10
제 233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하수도 ) 실시계획인가.....	12
제 234 호 :	도시계획 ( 재개발구역 ) 일부변경 지적승인.....	13
◎ 방 고		
제 207 호 :	공인신조사용 승인공고.....	13
제 208 호 :	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.....	14
제 209 호 :	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점업체 대책 지정공고.....	14
제 210 호 :	이수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도로 및 환지계획 일부변경인가 공고.....	15
제 211 호 :	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.....	15
제 213 호 :	KS 표시 정지처분 해제공고.....	16
제 214 호 :	도시계획시설 ( 공용의 청사 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	16
제 215 호 :	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 건축물의 건축억제.....	18
제 216 호 :	도시계획사업 시행.....	19

◎ 사 령

◎ 정 정

조 례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241 호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 
설치조례중개정조례

분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 
시립학교 건강관리소 설치조례중  
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8.5.19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 창 갑

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설치조  
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의무기침을 지방의무부기침  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 
시립 근로자 후생시설사용료 징수조  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8.5.24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242 호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 
사용료징수조례

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사용  
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 
립 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 제 6 조  
의 규정의 의기 사용료의 징수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
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용료) 근로자후생시설의 사  
용료는 별표에 정한 요율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용료환부) 이미 납부한 사  
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 
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 
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손해배상) 이용자가 허가없이  
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 
또는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 
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사용료수납) ①관장은 소관  
시수입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 
조정결의를 필한후 수입금을 익일까  
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.

②관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분의 수  
입징수보고서에 시금고가 발행하는  
수입금 월중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  
에게 제출한다.

제 6 조 ( 위탁사용료 ) 위탁경영시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위탁사용료는 수탁경영자의 연간 사업계획서상의 총수입금중 세금을 공제한것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공단복지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7 조 ( 시행규칙 ) 이 조례시행에

(별표)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*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*

시 설 사 용 료

78.5.24

124호

제 2호

종 별	단 위	요 금	
		시 지 영	위 탁 경 영
1. 숙 박	1 인 1 박	60 원	180 원
2. 식 사 : 백 반 분 식 기 타	1 인 1 식	60 원	200 원
	'	-	150 원
	'	-	대중요금의 70%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요금
3. 목 욕 : 대 인 소 인	1 인 1 회	50 원	160 원
	'	-	80 원
4. 이 발 : 조 발 삭 발	1 인 1 회	50 원	240 원
	'	-	120 원
5. 미 용 : 고 대 파 마	1 인 1 회	-	170 원
	'	-	500 원
6. 탁 아 : 유 아 영 아	1 인 1 월	1,000 원	
	'	1,500 원	
7. 기술교육수강	1 인 1 월	2,000 원	
8. 예식장 : 식 장 부대시설	1 회	-	3,000 원
	'	-	15,000 원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19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건설부 고시

제 41 호('77.3.16)에 의거 이를 지적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5.15

서울특별시장

○ 도로 조서

구분	등급	류번	번호	폭원	연장	시점	증결	비고
기정	중도	1	17	20	2,420m	대흥동(대3-14)	합성동373(대3-8)	
변경	대로	3	126	28	.	.	.	연구간 폭원 8m 확장

별첨 : 도면표시와 길음(도면생략)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24 호

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전 설부 고시제 41 호('77.3.16) 및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시행령

제 7 조 2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5.17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서울운동장	중구 을지로 7 가 신당동일대	124,560㎡	전고시제 232 호(77.12.1) 결정사항

별첨 : 도면생략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26 호

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도로)결정, 변경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 청사도로)을 다음과 같이 결정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('77.3.16)

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5.20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설(공용의 청사)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공용의 청사	강남구 명일동 26 부근	65,490 (19,810명)	직업훈련원 (시유지:보진사회국)
"	"	영등포구 시흥동산 139 부근	15,296 (4,627명)	남부부녀보호소 (보진사회국)

나. 시설(도로:직업훈련원)변경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폐지	소로	3	6	110	암사동 산 42	명일동 12	부지내 소로폐지
"	"	2	8	110	명일동 12	"	"
"	"	1	10	70	"	명일동 13	"
"	"	3	6	100	명일동 28	" 26	"
"	"	2	8	180	" 2-2	" 26	"
기정	"	3	6	360	암사동 산 42	명일동 30	"
변경	"	1	10	360	"	"	폭원확장
기정	"	2	8	170	명일동 30	명일동 6	"
변경	"	1	10	170	"	"	폭원확장

별첨 도면생략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27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 3. 16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2. 길음3 동 지내 도로정비공사로 수용되는 토지,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.
3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

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5.22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지: 성북구 길음3 동 (909의 1-1009번지)

나. 사업종류·명칭: 길음3 동지내 도로정비공사

다. 사업규모: 폭 6-8 M  
연장 320 M

라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(성북구청장)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: 78. 3. 8 - 78. 5. 6

바.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: 사. 토지 및 건물소유자

공 사 토 지 조 서

번호	소재지	지목	수용면적	산출명규치	사 정		소 유 자	
					단가	금액	주소	성명
1	길음3 동 909의 1~1009번지간	도	1,700㎡				서울특별시 사 유 지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28 호

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 
관리처분계획인가

1.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 제 2 호 (78.1.11)로 공람한 마천 1.2.3 구역과 서울시공고 제 35 호 (78.2.10)로 공람한 바 있는

옥수 1.2 구역에 대하여 일부토지의 계획을 수정하고

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와 동법 65 조 규정에 의거 동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

4. 본 고시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통지할 것이나 투각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가롭한다.

1978. 5.23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29 호

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을 다음과 같이

가. 결정조서

구분	단 지 명	위 치	면적(㎡)	비고
건설	염곡단지	강남구 염곡동 135 일대	87,300	
"	새원(양재, 내곡) 단지	" 신원동 501-1 일대 원지동 238-5 일대	50,200	
"	신원단지	" " 455 일대	44,300	
"	정릉단지	" " 235 일대	45,000	
"	원터단지	" 신원동 406 일대	18,600	
"	새쟁이단지	" " 23-1 일대	30,900	

별첨:도면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30 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운동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

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('77. 3.16)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, 건축부지 증명원은 시민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란다.

1978. 5.23.

서울특별시장

운동장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('77. 3.16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 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
보인다.

1978. 5.24.  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주차장	소공동 76, 77-9	1,283㎡	반도복가구 한일은행근거리주차장
"	"	광장동 산 17일대	약 8,200㎡	위키림
"	"	홍인동 91번지일부	약 370㎡	승은주차장
"	운동장	광장동 산 21-1 일대	약 16,740㎡	정구장 (위키림)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31호

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 (78.4.3)로 시설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

16)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5.24.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
신설	중, 고등학교 (우진중, 고등학교)	강서구내발산동 59-2외 9필지	10,023 평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232 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, 도로, 학교, 시장, 공공용지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원, 도로, 학교, 시장, 공공용지)을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

제 41 호(77. 3. 16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8. 5. 24.

서울특별시 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지적승인조서

공원의종류	공원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아동공원	방배공원	방배동산75-1 외 1필지	63,050 (19,133명)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㎡)	연장(㎡)	시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2	101	8	360	신림동 710-1	신림동 747	
"	"	"		"	290	" 718-1	" 711-48	
"	중로	3		12	200	노량진동 27-2	노량진동 267-49	
"	소로	1		10	440	" 270-2	" 294-328	
"	"	2		8	320	" 268-2	" 289-42	
"	"	"		"	430	" 31-2	" 294-68	
"	"	3		6	20	" 287-1	" 289-88	
폐지	"	"		"	70	봉천동 49-49	봉천동 56-41	
기정	"	2		8	"	"	"	
변경	"	3		6	"	" 56-4	" 56-97	
기정	"	"	"	"	"	"	위치 변경	
변경	"	2	8	180	신림동 235-13	신림동 233-	3	
기정	"	"	"	110	"	"	연장	축소
변경	"	3	6	130	" 산 20-1	" 233-	3	
기정	"	"	"	90	"	" 231-	21	연장
신설	"	2	8	250	" 244-21	" 산 25		축소
"	"	"	8	160	사당동 220-73	사당동 220-79		
"	"	"	"	"	"	"	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다. 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조서

구분	사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설	학 교 용 지	신림동 산 66 - 1 와 5 필지	35,683 ( 10,794 평 )	
•	국, 중, 고등학교 영화국교, 영동포중교	대방동 13-1 의 18 필지	46,823 ( 14,164 평 )	기존학교
•	강남여자중학교	상도동 335-5 의 4 필지	15,398 ( 4,658 평 )	•
•	봉천여자중학교	봉천동 25-19 의 1 필지	13,752 ( 4,160 평 )	•
•	은로국민학교	후석동 230-2 의 6 필지	22,258 ( 6,733 평 )	•
•	봉천국민학교	봉천동 28-6 의 3 필지	24,897 ( 7,532 평 )	•
•	신림여자중학교	신림동 220-1 의 2 필지	19,008 ( 5,750 평 )	•
•	대림국민학교	대방동 391-62 의 32 필지	8,959 ( 2,710 평 )	•
기정	구 암 국민 학교	봉천동 491-4 의 32 필지	13,249 ( 4,006 평 )	•
변경	•	• 491 - 4 의	13,838 ( 4,186 평 )	추가 178 ㎡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라.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 승인조서

구분	시 장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설	상 대 시 장	상도동 324-1 ( 2 )	2,220 ( 671 평 )	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마.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설	공 공 공 지	사당동 220-6	1,450	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33 호

도시계획사업(하수도) 실시  
계획 인 가

1. 돈암국민학교 주변의 2개소 도로  
정비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
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 
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에 의하  
여 이를 고시함.
2. 본 공사로 수용되는 토지에 관한  
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 
미수명자에게는 이고시로 같이함.
3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  
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 
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5.24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동소문 6 가 27-17,  
동소문 4 가 248-1
- 나. 사업종류명칭 : 돈암국민학교 주변의  
2개소 도로정비공사
- 다. 사업의 규모 : 폭 : 8

연장 : 126

라. 사업의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 성북  
구청장 )

마.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: 1978.4  
- 1978.8

바. 사용또는수용할토지 : 별첨토지조서  
사. 토지, 건물 이해관계인 주소, 성  
명 : 별첨

인 가 증

1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동소문 6 가 27-  
17, 동소문 4 가 248-1
2. 사업의종류명칭 : 돈암국민학교 주  
변의 2개소 도로정비공사
3. 사업의규모 : 폭 = 8 연장 = 126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 성북구  
청장 )
5. 사업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 고시  
제 233 호
6. 사업기간 : 78.4-78.8
7. 사용또는수용할토지, 건물 : 별첨
8. 토지,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  
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 
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 
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여하여  
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  
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  
시계획을 별첨실제 도서와 같이 인  
가함.

1978.5.24

서울특별시장

관계인 주소, 성명

주 소	자 번	지 부	소 유 자
동소문동 6 가 27 의 17 · 4 가 248 의 1	동소문동 6 가 27 의 17 동소문동 4 가 248 의 1	도 로 도 로	서울시 서울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234 호

도시계획 (재개발구역)  
일부변경 지적승인

1. 도시계획 (재개발구역) 일부 변경  
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 
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  
시 제 41 호 ( '77.3.16 ) 의 규정

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 
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  
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 
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8.5.25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 구역 일부 변경 지적승인 조서

지구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당초	변경	증감	
소공제 1 지구	중구 태평로 2 가 및 소공동각일부지역	4,601	4,690	증 89	
소공제 2 지구	소공동일부 지역	4,727	4,727		
소공제 3 지구	태평로 2 가	3,970	3,970	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7 호

공인신조 사용승인 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 
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  
인조예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
1978.5. 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용개시일자 : 1978.5.23

2. 인 영

공인의 인영

인	
영	
공인명	제 1 부너부지관장수관인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8 호

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 
환지에정지 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6 호 ( 78. 5.4 ) 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한 영동 제 1 지구 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물 변경 지정 하였기 공고 한다.

2.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될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

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78. 5.

서울특별시장

( 환지에정지 변경지정내역 )

가. 사업명 : 영동 제 1 지구 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

나. 변경면적 : 10,076.5 명

다. 변경위치 : 관악구 방배동 산 30 의 1 호의 9 필지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9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 
지정업체 대체 지정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 지정 업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78.5.22

서울특별시장

1. 대체 지정 업체 조서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업체명	유일보온병 주식회사	(주)유니버설	
대표자	여 창 록	여 창 록	
소재지	강서구 화곡동 323-14	강서구 등촌동 161-1	
생산제품	보온병, 각종 합성수지, 건열기구	과 동	
지정번호	1529	1529	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210 호

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로  
및 환지계획 일부변경인가공고

1. 서울특별시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 도로 및 환지일부변경 인가 신청에 의하여 동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제 25 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도서와 같이 도로 일부변경 및 환지변경을 인가 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이수토지구획정리 조합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(공 고 내 용)

가. 사업명 : 이수토지구획정리  
사업

나. 시행지 : 관악구 방배동  
181-1번지 일대

다. 관계도서 : 별첨 (생략)

1978.5.

서울특별시장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211 호

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역정지  
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5호 (78.5.3)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한 연동 제 1,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역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공고한다.
2. 환지역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3. 본 공고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될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.

1978.5.

서울특별시장

(환지역정지 변경 지정 내역)

가. 사업명 : 연동 제 1,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

나. 변경면적 : 10,473.5 평
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반포동 산 33  
의 2호의 11필지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213 호  
 KS 표시정지처분 해제공고  
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9 조 규정에 의거 K·S ( 한국공업규격 ) 표시정지 처

분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고 표시품 생산을 계속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.  
 1978. 5.  
 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	제 1118 호	제 616 호
2. 허가일자	75.7.12	72.2.28
3. 업체명	유신금속공업 ( 주 )	삼선공업 ( 주 )
4. 대표자	김대순	이성태
5. 소재지	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12	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345-11
6. 규격번호	KSD 6759	좌동
7. 품명	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	좌동
8. 처분일자	78.3.17	좌동
9. 해제일자	78.5.	좌동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214 호  
 도시계획시설 ( 공용의청사 )  
 실시계획 인락공고  
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( 78. 3. 7 ) 로 고시된 제 1 별관 ( 수도권청사 ) 신축공사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하고자

이에 공고함.  
 2. 도시계획 사업 시행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제위계서는 동 공람기간내에 공람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.  
 3. 관계도서는 서울시 수도권 시설 과 및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  
 1978. 5. 24  
 서울특별시장



<p><b>공 랑 개 요</b></p> 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-1번지 일대</p> <p>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서울특별시 제1번관 청사 신축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 : 연건평 1,600 평 : 지하 1층, 지상 5층</p>	<p>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1977.12 - 1978.9</p> <p>6. 수용할토지 (적축토지) : 별첨토지조서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에의 소유자와 토 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예 외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</p>
--	--

**토 지 조 서**

서대문구 남동대지내역

도 면 번호	제 산 내 역			제 산 소 유 자		
	지 번	지 목	면 적	등 급	주 소	성 명
1	서대문구 합동 27-3	대 지	44.4	75	마포 동교동 16-4	이 병 용
2	" 27-5	"	20.6	75	"	"
3	" 1-10	"	20.0	70	종구 순화 1-89	김 귀 순
4	" 1-12	"	8.3	70	국 세 청	
5	" 1-15	"	10.0	70	서대문 합동 1-15	문 정 숙
6	" 1-21	"	10.0	70	국 세 청	
7	" 1-23	"	20.0	70	서대문 합동 1-23	윤 경 희
8	" 1-25	"	3.4	70	" " 1-25	최 실 선
9	" 1-26	"	5.8	70	" " 1-26	김 남 절
10	" 1-27	"	4.1	70	국	
11	" 1-28	"	5.8	70	국 세 청	
12	" 1-30	"	1.9	70	국	
13	" 1-31	"	8.1	70	서대문 합동 1-31	김 상 태
14	" 1-32	"	12.2	70	국 세 청	
15	" 1-33	"	13.2	70	서대문 합동 1-33	박 순 익
16	" 1-34	"	30.8	70	" " 1-34	정 봉 결
17	" 1-35	"	16.6	70	" " 1-35	박 흥 섭
18	" 1-36	"	14.5	70	" " 1-36	김 태 익
19	" 1-37	"	13.2	70	" " 1-37	서 경 인

재 산 내 역					재 산 소 유 자		
도면 번호	지 번	지목	평	등급	주 소	성 명	
20	서대문구 합동 1-38	대 지	3.0	70	국 세 청		
21	" 1-39	"	1.9	70	"		
22	" 1-40	"	2.9	70	서대문 합동 1-41	유 회 성	
23	" 1-41	"	7.1	70	" " 1-41	"	
24	" 1-42	"	7.8	70	국 세 청		
25	" 1-43	"	33.8	70	국 세 청		
26	" 1-44	"	9.8	70	서대문 합동 1-44	문 방 식	
27	" 1-3	구 거	135.9		국		
28	" 28-84	구 거	128.0	사 용	국		
	계		(337)				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215 호

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 건축  
물의 건축억제

건축법 제 44 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 170 조 제 1 항 규정에 의거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억제를 건축법 시행령 제 17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함.

1978.5.25

서울특별시 장

1. 대상지역 :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. 다만,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

역은 제외한다.

2. 건축물의 건축억제

가. 제한목적

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 예방

나. 대상건축물

1) 공공건축물

가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소속 기관의 청사 (다만,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직속기관, 입법부, 사법부, 헌법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는 제외한다.)

나) 정부부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

2) 민간건축물

가) 상업용 건축물

ㄱ) 사무실용 건축물 (다만, 공장 아파트등에 부수되는 사무실을 제외한다)

<p>ㄴ) 연예장, 유흥장, 사치성 오락</p> <p>ㄷ) 백화점, 시장등 판매장 (다만,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다)</p> <p>ㄹ) 숙박시설 (다만,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)</p> <p>나)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: 지상층의 연면적 231 제곱미터 이상</p> <p>다. 대상행위</p> <p>1) 건축물의 신축</p> <p>2) 건축물의 증축 (다만, 석재 당시 건축물 연면적의 1/10 이내의 증축은 제외한다)</p> <p>3) 새마을 사업에 따른 이축 또는 증축은 제외한다.</p> <p>라. 시행시기 1978.5.22 접수분부터</p>	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16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시행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 호 (72.12.12) 로 고시된 월제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및 동시행령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시키고자 이에 공고함.</p> <p>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가동함.</p> <p>3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78.5.25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월제로공사저촉토지조서

일련 번호	동 별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미아4동	8-362	장	471		오산학원
2	"	8-352	대	4		
3	"	6-33	"	7		중동학원

일련 번호	동 별	지 번	지 북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4	미아4동	8-350	임	0.9	동선동 4가 19	김 중 암
5	"	8-8	도	75	전지동 68-4	신 탁 은 행
6	"	8-351	"	183	"	"
7	"	8-226	임	265	"	"
8	"	8-347	대	128	"	"
9	"	8-221	임	96	"	"
10	"	8-222	"	98	"	"
11	"	8-223	"	97	"	"
12	"	8-224	"	97	"	"
13	"	8-225	"	164	"	"
14	"	산 350-14	"	4	"	"
15	번 2 동	80	전	41	번동 93	김 용 환
16	"	81-2	"	39	"	김 윤 등
17	"	81-1	"	18	"	"
18	"	82	"	80	"	"
19	"	83	"	386	"	"
20	"	86	"	97	"	"
21	"	88-2	"	76	"	"
22	"	89-1	"	613	"	"
23	"	88-1	"	58	"	"
24	"	97-1	대	178	번동 96	김 석 준
25	"	96	"	80	"	"
26	"	95-3	"	107	"	"
27	"	95-1	"	80	"	"
28	"	105	"	455	미아동 62-3	김 창 순

일련 번호	등 별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29	번 2 동	10442	대	32	미아동 62-3	김 창 순
30	"	104-5	"	24	번동 86	김 석 준
31	"	106-1	전	248	" 111	허 정 만
32	"	107	"	68	"	"
33	"	108	"	43	"	"
34	"	109	"	85	번동 96	김 석 준
35	"	111-7	대	28	이관동 264-301	장 경 호
36	"	111-3	전	273	번동 96	김 석 준
37	"	111-6	대	41	"	"
38	"	110-3	"	4	"	"
39	"	110-1	"	402	"	"
40	"	58-1	"	56	신영동 24	이 분 너
41	"	57-26	"	121	번동 57-5	한 수 권
42	"	59	전	141	장위동 76	최 복 진
43	"	57-25	"	48	하월곡동 90-127	윤 병 소
44	"	56-1	"	141	"	"
45	"	23-5	"	286	삼선동 4가 104	실 화 용
46	"	24-1	"	130	장위동 74-20	윤 석 립
47	"	52-4	"	15	"	"
48	"	51	"	124	재기동 734	조 복 순
49	"	25-3	"	85	번동 182	김 태 석
50	"	50	"	50	삼선동 4가 104	이 영 백
51	"	49-2	"	121	미아동 74-1	김 인 순
52	"	49-1	"	130	"	"
53	"	26-1	"	153	미아동 166-11	손 상 익

일련 번호	동 별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54	번 2 동	48-2	전	239	번동 182	김 태 천
55	"	47-1	"	69	전농동 894-10	최 백 만
56	"	30-1	"	90	제기동 251	김 국 진
57	"	29-1	"	79	삼선동 4 가 104	신 재 천
58	"	14-1	"	137	중앙동 66-11	성 정 훈
59	"	31	천	106	장위동 223	박 종 근
60	"	산 28-21	임	40	남대문로 1가 14	조 흥 은 행
61	"	산 28-20	"	490	"	"
62	"	산 28-18	"	219	"	"
63	"	산 28-16	"	17	"	"
64	"	산 28-19	"	220	"	"
65	"	산 28-15	"	39	"	"
66	"	산 28-17	"	17	"	"
67	월 계 동	862-1	전	89	예지동 43	김 영 두
68	"	865-5	답	273	월계동 584	송 종 수
69	"	864-4	"	148	장위동 79	박 민 수
70	"	863-1	대	38	중앙동 14-5	유 일 용
71	"	868-4	답	375	번동 96	한 석 승
72	"	872-1	"	14	"	"
73	"	539-3	"	236	"	"
74	"	539-27	"	223	장위동 76	김 원 천
75	"	539-25	"	97	"	"
76	"	539-12	"	15	월계동 539-12	김 재 원
77	"	539-13	"	16	" 539-13	김 원 식
79	"	539-22	"	5	" 539-7	정 규 화

일련 번호	동 별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79	월계동	539 - 6	답	27	월계동 539-6	최 거 석
80	"	539 - 5	"	30	해화동 15-89	김 원 태
81	"	539 - 4	"	20	월계동 539-4	최 의 경
82	"	539 -20	"	8	" 539-3	황 대 봉
83	"	539 -19	"	0.6	장위동 103	김 재 자
84	"	540 - 1	"	160	" 89	안 송 익
85	"	541	"	73	" 89	안 송 태
86	"	545 - 3	"	142	" 89	안 종 익
87	"	541 - 3	"	4	" 89	안 종 태
88	"	545 - 2	전	23	" 89-24	안 종 열
89	"	547 -51	"	28	장위동 79	박 이 용
90	"	547 -15	"	9		
91	"	547 -13	"	130	장위동 79	박 이 용
92	"	547 -11	"	84	안암동 5가 108	김 동 환
93	"	547 -47	"	258		민 형 식
94	"	547 -46	입	14	장위동 69	신 완 성
95	"	547 -48	전	4	하원리동 52	박 성 만
96	"	547 -44	"	126	번동 182	김 용 길
97	"	547 -43	"	62	명불동 1가 7-29	안 대 문
98	"	568 - 3	"	27	월계동 550	송 윤 태
99	"	568 - 1	"	99	" 550	"
100	"	567 - 1	"	79	장위동 72	김 용 규
101	"	566 - 3	"	100	화룡동 1-223	서 계 금
102	"	566 - 4	대	26	해화 6-86	이 절 순
103	"	625 - 4	전	740	번동 313	이 수 봉

일련 번호	동 별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04	월계동	626	전	157	청량리동 205-138	박 승 철
105	"	625-2	"	81	번 동 313	이 수 봉
106	"	628-1	"	55		민 형 식
107	"	629-2	"	289	월계동 산 76	인덕학원
108	"	634-4	"	261	"	"
109	"	295-5	"	50	"	"
110	"	295-1	"	66	"	"
111	"	634-3	"	48	"	"
112	"	635-3	"	201	장위동 106	최 순 영
113	"	287-26	답	91	"	"
114	"	292-3	"	126	남가좌동 295-5	이 상 문
115	"	287-24	"	272	장위동 106	최 순 영
116	"	633-3	"	34	월계동 산 76	인덕학원
117	"	292-4	"	138	남가좌동 295-5	이 상 문
118	"	288-2	"	47	수유동 53-78	이 별 하
119	"	289-4	"	381	구의동 107-7	김 용 배
120	"	289-4	"	45	복아현동 163-42	이 봉 춘
121	"	285-3	"	128	" 163-42	이 금 자
122	"	290-2	"	94	구의동 107-7	정 계 화
123	"	289-1	"	33	용봉아파트 15	오 석 찬
124	"	303	답	237	장위동 93	최 조 영
125	"	305-1	"	113	" 69	한 상 문
126	"	306-1	"	89	" 69	"
127	"	307-1	"	22	" 69	"
128	"	304-5	"	312	" 68-141	윤 석 찬



일련 번호	동 명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29	월계동	313	답	459	장위동 93	최 경 진
130	"	312-1	잡	9	" 115	최 권 용
131	"	314-3	남	255	하방심리 335	홍 명 석
132	"	314-5	"	22	" 335	"
133	"	252-1	"	103	장위동 115	최 권 용
134	"	250-13	"	380	" 66	박 광 성
135	"	243-1	"	303	승인동 211-114	이 세 봉
136	"	244-1	전	145	하설곡동 88-382	이 기
137	"	245-1	"	204	장위동 89	한 명 천
138	"	246	"	182	" 89	"
139	"	247-3	답	840	쌍림동 1	이 분
140	"	산 106-1	임	1044	와룡동 1-223	서 재 금
141	"	산		276	"	"
142	공농동	하계동 319-1	잡	189	장위동 68-4	박 용 호
143	"	313-1	답	546	창신동 662-1	김 근 식
144	"	292-40	"	196	신설동 81-72	김 철 규
145	"	322-3	"	111	창 동 553-32	이 민 숙
146	"	292-39	"	154	하계동 253	김 삼 만
147	"	322-2	"	70	승인동 200-32	오 호 근
148	"	292-38	"	50	우이동 72-34	박 중 태
149	"	322-7	"	176	승설동 200-32	오 호 근
150	"	292-36	"	91	석평동 231	박 선 용
151	"	292-34	"	270	"	"
152	"	292-32	"	261	동부 이촌동 301-7	박 선 천
153	"	331-1	"	7	하계동 209	박 성 봉

일련 번호	동 별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54	공농동	하계동 324-1	담	287	상왕길리동 518-5	김 순 심
155	"	330-1	"	106	전농동 459-4	최 규 영
156	"	329-5	"	143	하월곡동 88-524	김 영 서
157	"	291-4	"	73	석관동 220	손 광 훈
158	"	325-1	"	276	하계동 135	이 종 환
159	"	291-3	"	147	석관동 220	손 광 훈
160	"	290-4	"	3	신설동 81-72	김 철 규
161	"	289-5	"	31	석관동 220	손 광 훈
162	"	289-3	"	186	양동 34-48	이 소 단 회
163	"	289-13	"	2	"	"
164	"	하계동 289-12	"	283	"	"
165	"	290-5	"	240	신설동 81-72	김 철 규
166	"	287-16	"	46	관철동 6-5	이 순 화
167	"	292-26	"	148.5	하계동 253	길 살 만
168	장위동	231-203	대	4	경농동 192-192	이 성 윤
169	"	231-272	"	17	종로 1가 52-5	동방생명보험(주)
170	"	231-273	"	5	"	"
171	"	231-202	"	69	"	"
172	"	231-573	"	78	"	"
173	"	231-200	"	8	"	"
174	"	231-198	"	5	"	"
175	"	231-204	"	2,420	"	"
176	"	218-17	"	7	진관내동 175	원 동 성
177	"	218-13	도로	2	종로 1가 52-5	동방생명보험(주)
178	"	218-12	대	2	"	"
179	"	231-201	"	87	"	"

사 령

◎ 1978. 5. 13

판광운수국장 국 옹 호  
부 이 사 관

이사관에 임함.

◎ 1978. 5. 22

통계담당관실 이 중 인  
지방행정사무관

통계담당관실 통계기준  
계장에 포함.

통계담당관실 이 남 수  
지방행정사무관

통계담당관실 통계조사  
계장에 포함.

통계담당관실 김 흥 권  
지방행정사무관  
사회과 직업안정계장에

포함.

정 정

시보 제 654 호 ( 78.4.29 ) 에 게재된 내용중 다음과 같은 오석이  
있으므로 이를 정정 한다.

1978. 5. 1

서울특별시장

통계담당관실 홍 원 주  
지방행정사무관  
운영과 교육훈련계장에  
포함.

◎ 1978. 5. 23

시 민 과 김 국 선  
지방행정서기보

원에 의하여 그직을  
변함.

◎ 1978. 6. 1

경기도양평군 이 중 영  
지방토목기원
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 
지방토목기원에 임함  
강남구 근무를 명함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페이지	오 류 사 항	정 정 사 항
조례 1237 호	6-3	별표중 구분 4 화물적차장	과동 과동 화물적차장
	6-3	별표중 구분 5 철도계도에	과동 과동 철도계도아